

의안번호	2205223
의 퇴 인	김남희의원
회 답 일	2025.01.09.
추계번호	24C481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 (의료급여의 내용 등)	-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음 8. 의료기기(「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함)의 지급 또는 대여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 (의료급여의 내용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의료급여의 내용 등(안 제7조)

-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기¹⁾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등이 포함된 1

1)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중 수급권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2종 수급권자로 구분

-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는 제1차~제3차 의료급여기관 및 선택한의원, 치과의원 등에서 입원·외래·약제 이용 시 현행법 제7조제1항²⁾의 각 호에 따른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를 받는 데 따른 의료비 등을 감면·면제 받을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의료급여” 사업에 국비 기준 8조 9,377억원(국고보조율 75.7%)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기기 구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이 될 것이나, 개정안이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 기준과 계산 방법 등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³⁾ 현 시점에 합리적인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움
 - 예시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99.8만명(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65.6%),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5.3만명(23.2%)인데,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됨
 - 또한 식대, 2~3인실 입원료, 치아홈메우기는 대상자에 따라 0~5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연분만, 중증질환자, 고위험 임신부 등 특정 대상자에 대하여도 시행령을 통해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음
 - 참고로, 현재 동법 제12조에 따라 일부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으며(표 1, 2) 참조), 이 외의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경우 급여 확대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증가가 예상됨

2)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3)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표 1] 요양비(의료기기) 급여 종류 및 급여 기준

연번	구분	급여내용	요양비
1	자동복막 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 복막 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1일 10,420원
2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 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당뇨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제1형 당뇨) 전체: 1일 2,500원 (만 19세 미만: 4,500원) (제2형 당뇨) 1일 900원~2,500원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 1일 10,000원(만 19세 미만: 11,000원)
3	당뇨병 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관리기기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연속혈당측정기: 210,000원/3개월 - 인슐린자동주입기 - 기본형: 1,700,000원/개 - 센서 연동형: 2,500,000원/개 - 복합폐쇄회로형: 4,500,000원/개
4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비	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간헐적 도뇨 카테터 지원 : 9,000 원/일 (최대 6개/일)
5	산소치료 (산소발생기)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대여받는 경우	가정용 : 120,000원/월, 휴대용 : 200,000원/월
6	인공호흡기 대여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인공호흡기대여료 : 356,000~535,000원/월
7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기침유발기 대여료 : 160,000원/월
8	양압기	양압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양압기 대여료 76,000~126,000원/월 - 소모품(마스크) 구입비(95,000원/1개(연))

자료: 보건복지부

[표 2] 요양비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82,680	32,960	204,796	37,072	232,435	42,066
복막관류액	1,161	853	1,168	822	1,169	875
소모성 재료 (자동복막투석 등)	2,310	804	2,143	763	1,923	712
당뇨 소모성 재료	77,282	9,571	82,430	10,805	87,598	12,181
당뇨병관리기기	188	65	432	114	409	126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4,509	3,454	4,976	3,854	5,153	4,012
산소치료	65,340	9,872	76,669	11,662	92,054	14,113
인공호흡기	12,491	7,185	13,297	7,482	14,406	8,000
기침유발기	3,028	476	3,149	493	3,058	477
양압기	17,532	1,533	21,700	1,899	27,834	2,445

자료: 보건복지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